

#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

---

## 1. 개정이유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무단보행자, 낙하물 등을 신속히 탐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돌발상황검지시스템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용어의 해석의 차이 등이 발생하고 운영평가 기간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운영평가 기간의 단축 및 경비 산정기준 조정(제4조제1항제5호 및 별표 2)

운영평가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안 제4조제1항제5호) 평가기간 중 돌발상황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평가의 효율성을 확보(별표 6 3. 가. 3))하는 한편, 운영평가 기간 단축에 따라 성능평가 경비 산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나.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는 용어의 정비(별표 6 1. 나, 2. 가. 및 2. 나.)

“돌발상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장비 성능을 판단하는 “검지”, “오검지”, “다른유형검지” 상황에 대한 표현을 구체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정비된 용어에 개념에 따라 “정검지율”, “다른유형검지율”, “오경보”에 대한 설명과 관련 수식을 정비함

다. 기본성능평가 낙하물 및 이동물체에 대한 평가를 협의사항으로 조정(별표 6 3.)

평가 실시여부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낙하물 및 이동물체에 대한 평가를 협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히함

라. 운영평가 기간 단축에 따른 평가방법 정비(별표 6 3.)

운영평가 기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효 이벤트 횟수 부족 문제 해소 및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평가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의함

마. 별표6 불필요한 용어, 설명 등을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7일)”을 “(3일)”로 한다.

별표 2의 세 번째 항목 중 일곱 번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인건비 산정 기준 중 운영평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운영 평가(실제 운영데이터/CCTV영상 분석 평가)

· 인건비 =  $\sum$ 기술자 등급별 소요인원×등급별 일일노임단가×소요일수

소요 인원	구분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본 3일(주야간)	0.5명	1.5명	3.5명
평가일수 추가 1일당 (주야간)	-	0.5명	1명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고시 이전에 설치한 장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따른다.

##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성능평가 기준

### 1. 개요

#### 가. 대상장비

- 이 기준은 도로상에서 임의로 발생하는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낙하물’, ‘보행자’, ‘이동물체’ 등의 돌발상황 이벤트 종류를 자동으로 검지하여, 운영자에게 돌발 검지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인 “돌발상황 검지시스템(AIDS, Automatic Incident Detection Systems, 이하 “AIDS”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나. 용어정의

- “돌발상황”이라 함은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낙하물’, ‘보행자’, ‘이동물체’ 등이 주행공간에 갑자기 출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 “AIDS”이라 함은 도로의 노변에 설치되어 돌발상황을 자동으로 검지하고, 운영자에게 돌발 검지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이벤트(Event)”라 함은 돌발상황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적 사건을 말한다. 예로 야생동물(고라니 등)을 충격 후 차량이 정차한 돌발상황의 이벤트는 ‘이동물체’와 ‘정지차량’을 말한다.
- “유효 이벤트(Available Event)”라 함은 발생 이벤트 중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시간(5초 이상)까지 존재하는 이벤트를 말한다.
- “검지(Detection)”라 함은 유효 이벤트를 시스템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정검지(True Detection)”라 함은 확인된 이벤트 중 돌발상황 유형을 정확히 구분한 것을 말한다.
- “다른유형검지(Different Type Detection)”이라 함은 시스템이 검지한 이벤트가 실제와 다른 유형으로 검지한 것을 말한다. 예로 정지차량을 역주행차량으로 검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 “미검지(Not Detection)”라 함은 유효 이벤트를 시스템이 검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오경보(False Alarm)"라 함은 검지영역내 이벤트가 없음에도 시스템이 이벤트로 검지한 경우를 말한다.
- "검지시간(Detection Time)"이라 함은 실제 이벤트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스템이 정상 검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말한다.
- "검지영역(Detection Range)"이라 함은 시스템이 이벤트를 검지하기 위해 설정한 검지지점의 시작지점과 종료지점까지의 거리 및 폭을 말한다.
- "시험도로(Test Road)"라 함은 기본성능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폐쇄된 환경을 지닌 도로를 말한다.

## 2. 성능기준

### 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정검지율(TDR), 다른유형검지율(DTDR), 오경보(FA)로 한다.
- 정검지율(TDR)은 유효 이벤트 발생 횟수 대비 정검지 건수의 비율로 평가한다.
- 오경보(FA)은 평가일수 대비 오경보 건수로 평가한다.
- 다른유형검지율(DTDR)은 유효 이벤트 횟수 대비 다른유형검지 건수의 비율로 평가한다.

### 나. 평가척도 분석방법

- 각 항목별 평가척도는 (식1), (식2), (식3), (식4)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text{정검지율(TDR)} = [\text{정검지 횟수} / \text{유효 이벤트 횟수}] \times 100\% \quad (\text{식1})$$

여기서, 유효 이벤트 발생 후 시스템이 검지하여 통보한 시각의 차이가 15초 이상 소요된 경우에는 미검지로 간주하여 검지 횟수에서 제외한다.

$$\text{다른유형검지율(DTDR)} = [\text{다른유형검지 횟수} / \text{검지 횟수}] \times 100\% \quad (\text{식2})$$

$$\text{오경보(FA)} = [\text{오경보 건수} / \text{평가기간}] \times 100\% \quad (\text{식3})$$

다만, 이벤트 지속시간이 5초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성능평가 결과 산출 및 표기

- 성능평가 결과는 검지거리 단위구간별(최소 100m, 최대 200m) 분석한 **결과를 산출하며**, 성적서에도 평가결과를 단위구간별로 표기하여야 한다. 가령, 검지거리가 600m인 장비에 대해서는 성능평가 결과를 0~200m, 200~400m, 400~600m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단위구간별 평가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성능평가 결과에는 [별지 7]과 같이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평가 시 장비 설치 위치/높이, 평가장소, **날씨 등** 평가조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성능평가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로 산출한다.
- 사업시행자가 전담기관에 평가업무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성능평가 성적서로 발행하여야 한다.

## 라. 성능기준

-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별 성능기준은 <표 12>와 같다.

<표 12> 돌발상황검지시스템(AIDS)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별 성능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최상급	상급	중급	중하급
정검지율(TDR)	TDR $\geq$ 95%	95%>TDR $\geq$ 90%	90%>TDR $\geq$ 85%	TDR<85%
다른 유형 검지율(DTDR)	DTDR<10%	10% $\leq$ DTDR<15%	15% $\leq$ DTDR<20%	DTDR $\geq$ 20%
<b>오경보(FA)</b>	<b>0건/1일 이하</b>	<b>1건/1일 이하</b>	<b>2건/1일 이하</b>	<b>3건/1일 이상</b>

## 마. 합격기준 및 결과판정

- AIDS의 성능평가 합격기준은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별 성능기준 및 관리기준 등의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 성능평가 결과는 <표 19>의 검지거리별 평가단위를 기준으로 단위구간별(200m 간격)로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표 13>의 예시와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표 13> AIDS 검지영역 600m에 대한 평가결과 예시

평가항목	검지거리(600m)에 대한 평가단위 구간별 (200m간격) 평가결과					
	0 ~ 200M		200 ~ 400M		400 ~ 600M	
정검지율	89.0%	중급	95.0%	최상급	92.0%	상급
다른유형검지율	14.0%	상급	9.9%	최상급	12.0%	상급
오경보	1건/1일	상급	0건/1일	최상급	2건/1일	중급

- 사업시행자는 성능평가전담기관에 평가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장비별 합격기준 및 관련 근거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3. 평가방법

#### 가. 평가 종류 및 평가방법

- 성능평가의 종류 및 평가 시기는 「성능평가 기준 제4조 제2항」을 따라 기본 성능평가,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1) 기본성능평가 방법

- 기본성능평가는 정지차량, 낙하물, 보행자, 이동물체 등 다양한 돌발상황 시나리오 수행과 돌발상황 시나리오 재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일반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구간 즉, 시험도로에서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시험도로는 다음 <표 14>와 같은 요구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표 14> 기본성능평가 수행을 위한 시험도로 요구사항

구분	시험도로 요구사항
도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폭은 2차로 및 갓길을 포함하여 약 10m 이상이어야 함</li> <li>· 도로연장은 평가수행 검지거리 및 평가차량 회차거리를 포함하여야 함</li> <li>· 직선도로 및 평탄한 도로에서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li> <li>· 단, 사업시행자가 특수한 지역에 대한 평가를 요구할 경우, 해당지역의 설명과 곡선반경, 종단구배, 횡단구배 등을 명시해야 함</li> </ul>
기반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 설치를 위한 현장구조물(폴대, 갠트리 등)</li> <li>· 평가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li> <li>· 전원공급을 위한 설비</li> <li>· 야간평가 수행을 위한 조명시설 등</li> </ul>

- 기본성능평가는 현장에서 설치·운영되기 이전 단계에서 장비 자체 성능을 확인

하기 위한 것이므로 AIDS 모델 단위로 평가한다.

- 기본성능평가는 다양한 돌발상황 시나리오 재현이 필요하며 그 요구사항은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기본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차량, 보행자, 낙하물, 이동물체 요구사항

준비물 구분	이벤트 유형	요구사항
차량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 대수 : 3대 이상 · 종류 : 1종 차량군에서 서로 다른 종류 ①일반승용, ②승합, ③경차, ④화물차, ⑤SUV
보행자	보행자	· 유형 : 보통 성인 남자 · 크기 : 키 165-185cm, 몸무게 65-85kg · 복장(색상) : 상하의 포함하여 2가지 이상 색상 착용
낙하물 (협의)	낙하물	· 색상 : 연한 갈색, 청색, 파란색 등 · 재질 : 금속류(철, 알루미늄 등) 비금속류(종이, 나무, 플라스틱, 솜 등)
이동물체 (협의)	이동물체	· 색상 : 연한 갈색, 청색, 파란색 등 · 재질 : 금속류(철, 알루미늄 등) 비금속류(종이, 나무, 플라스틱, 솜 등)

※ 낙하물 및 이동물체는 평가요청이 있는 경우 크기, 색상, 재질 등을 협의하여 수행한다.

- 기본성능평가는 정지차량, 보행자, 역주행 등 다양한 돌발상황 유형의 검지성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샘플수를 200회 이상 확보해야 하며, <표 16>은 단일 이벤트 평가와 복합 이벤트 평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현횟수 및 이벤트 횟수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표 16> 기본성능평가의 평가 시현횟수 및 이벤트 횟수

평가 구분	돌발상황 유형	주/야	시현횟수	이벤트 횟수
단일 이벤트 평가	· 정지, 역주행 · 보행자	주간 야간 <sup>주)</sup>	60회 이상	84회 이상
복합 이벤트 평가	· 정지 + 보행자	주간	20회 이상	120회 이상

※ 야간평가는 단일 이벤트 평가에만 적용하며, 이벤트 횟수는 주간평가의 20%를 적용하여 평가함(주간 70회, 야간 14회)

- 기본성능평가는 평가시간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주간(일출 30분후-일몰 30분 전)과 야간(일몰 30분후-일출 30분전)에 <표 16>에서 정한 평가를 수행하며, 검지방식이 영상인 경우에는 일출 혹은 일몰(기상청예보기준의 전후 15분) 시간대를 주간평가에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 2) 준공평가, 이설/변경 평가, 정기평가 방법

-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는 돌발상황 검지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모든 AIDS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해당 도로구간에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에 사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요구사항은 기본성능평가와 동일하게 <표 15>를 준용하여 준비한다.
- 다음 <표 17>은 평가항목별 시현횟수 및 이벤트 횟수에 대한 예시로 단일 이벤트 평가와 복합 이벤트 평가로 구분하여 해당 도로구간에서 안전에 문제없고 재현이 가능한 돌발상황 유형으로 평가해야 한다.

<표 17> 준공평가, 변경/이설 평가, 정기평가의 평가항목별 시현횟수 및 이벤트 횟수

평가 구분	돌발상황 유형	주/야	시현횟수	이벤트 횟수
단일 이벤트 평가	· 갓길정지, 역주행(후진) · 보행자	주간 야간 <sup>주)</sup>	40회 이상	40회 이상
복합 이벤트 평가	· 정지 + 보행자	주간	10회 이상	20회 이상

- ※ 야간평가는 영상방식을 활용한 기기에 한하여 단일 이벤트 평가에만 적용하며, 이벤트 횟수는 주간평가 30회, 야간평가 10회를 적용함
-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의 평가시간은 기본성능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정기평가의 경우 준공 후 2년이 지난 모든 AIDS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준공 후 2년 마다 수행 하되, 1년 단위로 총 평가 대상장비의 50%를 추출하여 운번제로 수행한다.

## 3) 운영평가 방법

- 운영평가는 준공평가, 변경/이설 평가, 정기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체평가로 수행할 수 있다.

- 운영평가는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 구간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 19>에서 제시한 평가 단위구간 중 평가기관이 일부 구간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운영평가는 실제 AIDS가 운영되는 운영상황 하에서 평가대상 장비가 수집한 데이터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돌발상황 이벤트 유형은 규정하지 않으며, 이벤트 횟수는 준공평가, 변경/이설 평가, 정기평가와 동일하게 평가 단위 구간별 최소 60회 이상으로 한다.
- 평가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최소 3일 이상 수행해야 하며, 3일간 장비가 수집한 이벤트 기준 횟수가 60회 미만인 경우 1일 단위로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평가기관은 평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이벤트 기준 횟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검지율에 해당하는 평가기준 자료 수집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오검지에 해당하는 평가기준 자료는 평가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수집한다.
  - 평가기관은 이벤트 횟수 충족을 위해 평가기간 중 임의의 시간에 시스템 검지 영역내에서 인위적인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 나. 평가대상 자료 수집방법

- 평가대상 자료 수집방법은 기본성능평가,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 모두 동일하게 평가대상장비가 현장에 설치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평가대상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에서 수집할 수 있다.
- 평가대상 장비에서 수집하는 평가대상 자료 항목은 평가에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표 18>과 같이 각 돌발상황에 대한 일련번호와 함께 이벤트 검지일자, 이벤트 검지시각, 이벤트 검지종류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8> 평가대상 장비에서 수집하는 평가대상 자료 양식(예시)

일련번호	이벤트 검지일자	최초이벤트검지시각 (시 : 분 : 초)	이벤트 검지종류	기타
001	yyyy/mm/dd	hh:mm:ss	정지, 역주행, 낙하물, 이동물체/보행자	예)영상번호

## 다. 평가기준 자료 수집방법

- 평가기준 자료는 실제 돌발상황 발생을 기록한 자료와 돌발상황 발생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 평가기준 자료는 기본성능평가,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 모두 동일하다.
- 돌발상황 발생 기록 자료는 평가자가 실제 돌발상황 발생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일련번호, 이벤트 유형, **이벤트 발생시간 및 특이사항**을 포함한다.
- 돌발상황 발생 녹화 영상자료는 돌발상황 영상분석 자료 및 평가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평가기간 동안 평가과정을 녹화한 자료를 말하며, 영상자료 수집을 위해 영상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장비를 통해 센터에서 수집할 수 있다.
  - 영상자료는 평가기관이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으로 영상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서 평가기관에게 영상자료를 제공하거나 영상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평가용 시계 및 영상장비는 평가 전 평가대상 장비와 시간동기를 해야 하며, 평가자는 평가기간 동안 수시로 시간동기 여부를 확인하여 1초 이상 시간차이가 발생할 경우, 시간동기를 다시하거나 이를 **점검하여** 평가시 반영해야 한다.

## 라. 평가단위 및 평가결과 분석방법

### 1) 평가단위

- AIDS는 검지방식 및 검지거리에 따라 100m에서 1,000m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검지거리 100m와 1,000m를 동일한 평가횟수로 평가시 동일한 성능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다음 <표 19>와 같이 전체 검지영역이 200m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단위를 200m 단위구간으로 구분하고, 전체 검지영역이 200m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100m에서 최대 200m를 평가단위 구간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표 19> AIDS 도로 종방향 검지영역 길이에 따른 평가단위 구분

검지영역 길이(m)	평가단위 구분	적용 예시 (R=곡선반경)
100m 이하	0~대상장비 검지영역	곡선(900m<R≤1,200m)
200m	0~200	
400m	0~200	곡선(1,200m<R≤2,300m)
	200~400	
600m	0~200	
	200~400	
	400~600	
800m	0~200	
	200~400	
	400~600	
	600~800	
1,000m	0~200	
	200~400	
	400~600	
	600~800	
	800~1,000	

- 따라서, AIDS는 <표 19>와 같이 검지영역 길이에 따라 평가단위 구간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성능평가 성적서도 평가단위 구간별로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검지영역의 시작지점은 음영지역의 끝점으로 하며, 성적서에 음영지역을 표기 하여야 한다.

## 2) 평가결과 분석방법

- 평가결과는 기본성능평가,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 모두 유효 이벤트 단위로 검지여부를 판별하고 평가결과는 <표 13>과 같이 평가항목별 평가단위 구간으로 평가등급을 판정하여 제공한다.
  - 다만, 동일 시간대에 다수의 유효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이벤트 발생 시각의 차이가 15초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 이벤트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평가기간 중 평가대상 장비의 이상으로 연속적으로 1시간 이상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별지 6서식]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성능평가 신청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성능평가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	기관명		성적서 발행 대상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우 : )		
담당자	이 름		전 화	
	E-mail		팩 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성능평가전담기관은 신청인의 성능평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시 연락 및 결과통보를 위하여 담당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필요로 하며, 수집·이용 목적 외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본 정보는 성능평가 접수 및 결과통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거부 시, 평가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집목적	ITS 성능평가 신청서 접수, 성능평가지 연락 및 결과통보	
		수집항목	이름, 전화, 팩스, 이메일	
보유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성적서 보존기간까지		
		본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년 월 일 이름 (서명)		
신청종류	<input type="checkbox"/> 기본성능평가 <input type="checkbox"/> 정기평가 <input type="checkbox"/> 준공평가 <input type="checkbox"/> 변경/이설평가			
평가대상	모델명		희망평가일	
	검지방식			
검지역역	<input type="checkbox"/> 100m이하(    m) <input type="checkbox"/> 0-100m <input type="checkbox"/> 0-200m <input type="checkbox"/> 0-400m <input type="checkbox"/> 0-600m <input type="checkbox"/> 0-800m <input type="checkbox"/> 0-1000m <input type="checkbox"/> 0-1000m초과(    m)			
낙하물/이동물체 평가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성능평가 경비 납입증명서 1부 3. 평가대상 장비, 시스템, 서비스 현황 1부 4. 평가대상 장비 모델명, 구성도 등 1부 5.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위와 같이 성능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 귀하				





	구분	특급기 술자	중급기 술자	초급기 술자
소요 인원	기본 7일(주야 24시간)	1명	3명	7명
	시험일수 추가 1일당 (주야 24시간)	-	0.5명	1명

	구분	특급기 술자	중급기 술자	초급기 술자
소요 인원	기본 3일(주야간)	0.5명	1.5명	3.5명
	평가일수 추가 1일당 (주야간)	-	0.5명	1명